

근로빈곤층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 동 현*

I. 문제 제기

최근 몇 년간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빈곤율은 외환 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은 199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중위소득 대비 50% 또는 60% 이하인 가구의 비율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실업률의 안정적인 추이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최근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격감도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재진·박능후, 2005).

<표 1> 빈곤율, 실업률 및 GDP 성장률 추이(1997~200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빈 곤 율	최저생계비 기준	3.9	8.2	9.4	7.6	6.5	5.2	6.1	6.0
	중위소득 50% 기준	9.1	10.7	10.6	10.0	9.8	9.7	10.8	11.7
	중위소득 60% 기준	15.7	17.0	16.9	16.4	16.5	16.6	16.8	18.0
실질GDP 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6
실업률		2.6	7.0	6.3	4.1	3.8	3.1	3.4	3.5

자료 : 김재진·박능후(2005).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dhkim@dongguk.ac.kr).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업대란으로 인한 실직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와 함께 2000년 10월에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이 빈곤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근로빈곤층 문제가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저숙련·저소득 취업빈곤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이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그간 적용확대에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용률이 50%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사회보장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2003년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빈곤층은 138만명(72만 가구)이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75만 가구)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하는 차상위 빈곤층은 86만명(35만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전병목이상은,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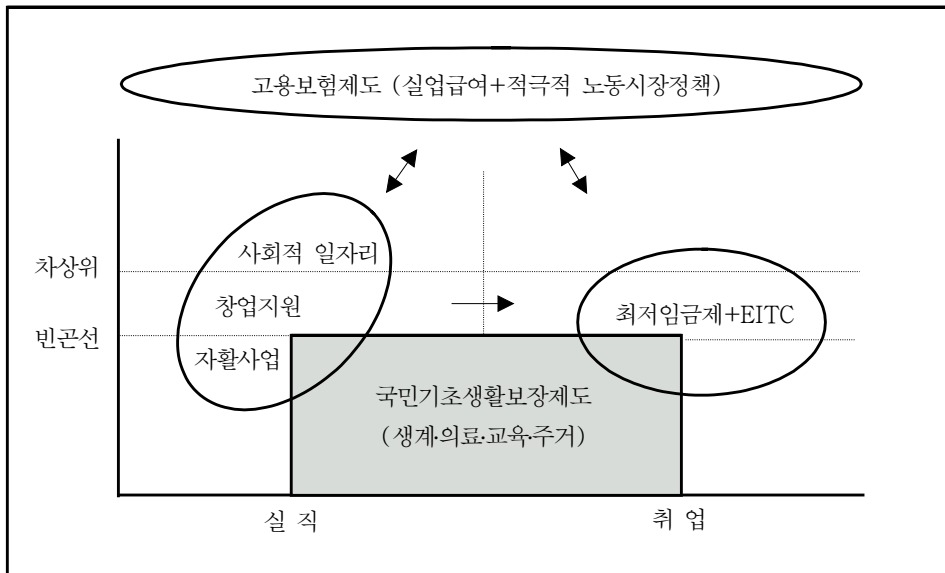
최근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시행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고용보험제도 등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 제도간의 조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각 제도간의 연계방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근로빈곤층 고용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각각의 제도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이러한 기존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빈곤탈출을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로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빈곤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재정경제부 외, 2004). 기존의 최저임금제는 임금근로빈곤층의 임금안전망(wage safety net)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병행되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는 근로빈곤가구는 최저임금과 근로소득보전세제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소득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성숙화되고 부양아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일제로 일을 하는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자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자와 일자리가 없는 실직빈곤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저소득층 창업지원제도 혁신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빈곤탈출을 촉진한다. 이러한 정책은 일차적으로 자활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득지원과 함께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실업부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실직빈곤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고용보험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정도 실업부조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재편과 함께 한국형 고용보험제도의 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된다.

III. 정책과제: 제도간의 연계방안

1.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지난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재정경제부 외, 2004). 그후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보전세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구인회, 2005; 김미곤, 2005; 안종석, 2005; 최현수, 2005). 일각에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대로 두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입장과 근로의욕 제고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결국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논의에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적용대상의 범위가 핵심적인 쟁점인 셈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생계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간의 소득지원으로 보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층이 보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차상위 빈곤위험계층에게 기초생활 수준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하는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소득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근로할 수 없는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최근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세제 적용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세제 적용방안과 적용제외 방안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병목이상, 2006).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대안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EITC 경험을 살펴보면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탈빈곤정책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근로소득의 증대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급여를 제공하고 소득과약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단계적 현실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제도가 성숙화된 시점에서는 일을 하는 근로자

라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로빈곤가구의 생활수준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개편되면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의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직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근로소득보전세제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두 제도의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두 제도 간의 연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최저임금제와의 연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개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랜기간 동안 최저임금제도가 고용 및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일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률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보전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전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OECD회원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 집단에게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치게 되며, 특히 청소년의 고용기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는 명확하게 저소득가구를 목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저소득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가구를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탈빈곤정책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공공부조제도가 아니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은 공공부조제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면 고용주가 임금을 낮춤으로써 세액공제의 일부를 포착하려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근

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조세부담의 전가(轉嫁)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보전세제 급여의 경제적 귀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의 설정은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억제하여 고용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세액공제의 일부를 가져가려는 가능성을 제한한다(OECD, 2003).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OECD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호, 2005). 따라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수준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현실화되어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될지라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면 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최저임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3년 EITC의 확대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고, 영국에서도 1999년 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WFTC)를 도입하면서 보수당에 의해 폐지되었던 최저임금제도가 다시 부활하였고, 초기에는 시간당 3.6파운드라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몇 년에 걸쳐 그 수준도 현실화하였던 경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도 단독으로는 빈곤탈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닐지라도 근로소득보전세제와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조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탈빈곤정책 패키지로서 근로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고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성숙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일제로 일을 하는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에는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식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에서 조달하고 있고, 급여세 부과를 통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을 고용보험료 수입에 의해 조달하는 방식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고,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 강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을 일반재정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특히 노동시장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이 정치적 영향이나 압력에 약하게 된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주만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물론 실업급여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급여세이다. 그러나 급여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성격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급여연계 급여세인 반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일반적 급여세, 특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일반적 급여세의 성격이 강하다. 즉, 실업급여 보험료는 세금과 급여와의 연계가 강한 급여세이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세금과 급여와의 연계가 약한 일반적 급여세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금과 급여와의 연계가 약하거나 없는 일반적 급여세의 경우 보험료 부담과 급여 지급의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에서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방식에서도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범위와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급여와는 달리 보험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과 프로그램이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향후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도 보험원리에서 보다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방식(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세의 증가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고용친화적이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료는 모두 급여세로 조달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총액의 17.6%, 노

<표 2> 우리나라 기업의 급여세율(2005년)

	사업주	근로자	전 체
산재보험	1.62	-	1.62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고용보험	0.95	0.45	1.40
건강보험	2.155	2.155	4.31
국민연금	4.50	4.50	9.00
퇴직(연)금	8.30	-	8.30
전 체	17.565	7.105	24.67

사부담분을 합산할 경우 2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다(허재준, 2006).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운용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보험체계에서 조세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용하, 2005; 어수봉, 2005; 허재준, 2006).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일정부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임금근로자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장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자활사업과의 정책적 연계도 용이해진다.

향후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제도는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틀에서 실업급여(소극적 정책)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적극적 정책)의 연계는 더욱 중요시된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고용정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재원조달방식의 대안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정책의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 김재호 외(2005),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연구』, 노동부.
- 김동현(2005),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1 (3).
- 김미곤(2005),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 김용하(2005), 「사회보험제도 일원화 방안 시론」,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열린정책연구원.
- 김재진·박능후(2005),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논문, 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05),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 국민기

- 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 안종석(2005),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재정포럼』.
- 어수봉(2005),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향후 10년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재정경제부 외(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 전병유·김혜원·신동균(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목·이상은(2006),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EITC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정진호(2005),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정진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병호(2003),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현수(2005),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기본원리와 쟁점」, 『복지동향』 77, 참여연대.
- 황덕순 편(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재준(2006),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 OECD(2003), *Employment Outlook*, Paris.